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ICTIMS' SERVICES UNIT

2008년 피해자의 권리 장전 법안(THE VICTIMS' BILL OF RIGHTS ACT OF 2008)

마시의 카드 및 자원 (Marsy's Card and Resources)

피해자에게 정의와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

담당자 성명:	전화:
검사 성명:	전화:
경찰 신고 번호:	대법원 번호:
피고인 성명:	생년월일:

2008년 11월 4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발의안 9, 2008년 피해자 권리 장전법안: 마시의 법(Victims' Bill of Rights Act of 2008: Marsy's Law)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카드에는 피해자 권리 장전 및 자원의 특정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법무장관 산하 피해자 서비스 부서(Attorney General's Victims' Services Unit)(1-877-433-9069)에 연락하여 마시의 법 및 지역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Victim Witness Assistance Center) 정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 또는 비행 행위의 범행 또는 미수로 인하여 직접적이거나 위협적인 신체적, 정신적 또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 으로 정의됩니다. '피해자'라는 용어에는 범죄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후견인도 포함되며, 사망자, 미성년자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자인 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피해자'라는 용어에는 범죄로 구금 중인 사람, 피고인 또는 법원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e)항)

주 전역 피해자 자원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이 기관에서는 방임, 학대 또는 착취를 당하는 노인 및 부양이 필요한 성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대 또는 방임을 신고하거나 해당 카운티의 성인 보호 서비스에 연락하려면 1-833-401-0832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국, 피해자 및 생존자 권리 및 서비스 사무소(CA Dep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Office of Victim & Survivor Rights & Services(OVSRS)): 이 기관에서는 가석방 심리, 가석방 조건, 구금 상태 변경 및 범죄자가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있을 때의 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1-877-256-6877번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www.cdcr.ca.gov/victim services)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Victim Compensation Program): 캘리포니아 피해자보상 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CalVCB))는 최후의 수단으로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alVCB는 범죄로인한 비용을 배상함으로써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CalVCB가보장하는 범죄 및 적격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피해자 증인 센터 또는 CalVCB로 1-800-777-9229번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www.victims.ca.gov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피해자 자원 센터(California Victims Resource Center): 피해자의 권리 정보, 해당 지역의 피해자를 위한 자원, 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1-800-VICTIMS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www.1800victims.org)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The California Relay Service): 이 기관에서는 언어 장애,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통화자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의사소통 도우미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711번이나 1-800-735-2929 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증인 지원 센터(Victim/Witness Assistance Centers): 해당 지역의 피해자/증인 지원 센터, 변호,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정보 및 기타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법무장관 산하 피해자 서비스 부서(Attorney General's Victims' Services Unit)(1-877-433-9069)로 문의하거나 www.oag.ca.gov/VictimServices 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victimservices@doj.ca.go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피해자 자원

국립 범죄 피해자 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1-202-467-8700 • victimsofcrime.org

전국 아동 학대 상담 전화(National Child Abuse Hotline):

1-800-4-A-CHILD • childhelphotline.org

전국 가정 폭력 상담 전화(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1-800-799-SAFE • www.thehotline.org

전국 인신매매 상담 전화(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1-888-373-7888 • humantraffickinghotline.org

전국 성폭력 상담 전화(National Sexual Assault Hotline):

1-800-656-HOPE • www.rainn.org

^{*}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Victim Compensation Program)에 따른 피해자의 정의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정의와 다를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피해자 권리 장전(Victims' Bill of Rights)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b)항

피해자의 사법 및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1. 형사 또는 청소년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자신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협박, 괴롭힘,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 피고인 및 피고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 3. 피고인의 보석금 및 석방 조건을 정할 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고려할 권리.
- 4.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찾거나 괴롭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내용, 또는 의료나 상담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밀 의사소통을 드러내는 내용, 또는 법률에 의한 특권 또는 기밀 사항인 기밀 정보나 기록을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사 또는 그 밖에 피고인을 대리하는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권리.
- 5.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사 또는 그 밖에 피고인을 대리하는 사람의 인터뷰, 증언 또는 증거 개시 요청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인터뷰의 진행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할 권리.
- 6. 요청 시 검사가 피고인의 체포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피고인의 체포, 기소된 혐의, 피고의 인도 여부 결정에 관해 검찰 기관에 합리적으로 통지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할 권리, 요청 시 해당 사건의 재판 전 처분에 대해 통지를 받고 정보를 받을 권리.
- 7. 요청 시 피고인과 검사가 출석할 수 있는 연체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공개 절차 및 모든 가석방 또는 기타 유죄 판결 후 석방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받을 권리 및 그러한 모든 절차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
- 8. 요청 시 체포 후 석방 결정, 항변, 선고, 유죄 판결 후 석방 결정 또는 피해자의 권리가 쟁점이 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 모든 소송 절차에서 심리받을 권리.
- 9. 신속한 재판과 사건 및 관련 판결 후 절차의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가질 권리.
- 10. 피고인에 대한 선고 전에 범죄 행위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양형 권고 사항에 관해 선고 전 조사를 수행하는 보호관찰부 공무원에게 제공할 권리.

- 11. 요청 시 피고인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법에 의해 기밀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선고 전 보고서를 받을 권리.
- 12. 요청 시 피고인의 유죄 판결, 형량, 수감 장소 및 시간, 기타 처분, 피고인의 석방 예정일, 피고인이 구금에서 석방되거나 도주한 사실을 통보받을 권리.
- 13. 배상에 대한 권리.
 - A. 범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입은 손해를 초래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배상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명백한 의지입니다.
 - B. 범죄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형량이나 부과된 처분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에게 배상을 명령해야 합니다.
 - C. 배상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모든 금전, 금품 및 재산은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한 금액을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14.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신속히 반환받을 권리.
- 15. 모든 가석방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가석방 절차에 참여할 권리, 범죄자의 가석방 전에 고려할 정보를 가석방 당국에 제공할 권리, 요청 시 범죄자의 가석방 또는 기타 석방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 16. 가석방 또는 기타 판결 후 석방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피해자, 피해자 가족, 일반 대중의 안전을 고려할 권리.
- 17. (1)항부터 (16)항에 열거된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피해자, 피해자의 선임 변호사,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검찰측 변호사는 사건을 관할하는 모든 재판 또는 항소 법원에서 위의 권리를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c)(1)항)